

## 공중교통수단

구분	대상 기준
<b>공중교통수단</b> (소관부처 : 국토부)	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
	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·객차 (「철도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)
	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
	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
	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